



 금융위원회	<b>보도 자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은행과장 박 광(02-2100-2950)	<b>담 당 자</b>	박 진 애 사무관 (02-2100-2953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 (02-3145-8020) 은행리스크업무실장 고 일 용 (02-3145-8350)		김 준 환 팀장 (02-3145-8035) 김 성 우 부국장 (02-3145-8360)

## 제 목 :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

### 1. 추진배경

- '18.1월부터 시행 예정인 바젤Ⅲ 규제(NSFR, 레버리지비율) 도입
- 감사원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감독 규정상 규제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바젤기준에 따른 규제 도입

- ① 중장기유동성비율 도입(NSFR, 규정 案 제26조)

$$NSFR^1) = \frac{\text{안정자금가용금액}^2) (\text{부채-자본} \times \text{가중치})}{\text{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}^3) (\text{자산} \times \text{가중치})} \geq 100\%$$

- 1) 순안정자금조달비율 : Net Stable Funding Ratio
- 2) 안정자금가용금액 :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 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
- 3)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: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

-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 부과

※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

#### ② 레버리지비율 도입(규정 案 제26조)

$$\text{레버리지비율} = \frac{\text{기본자본}}{\text{총익스포저}} \geq 3\%$$

1) 기본자본 : 자본금 + 자본잉여금 + 이익잉여금 + 신종자본증권 등  
 2) 총익스포저 :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+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

-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(익스포저에 위험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되는 BIS 비율 규제와 달리 단순합계로 산출)
- ※ 구체적인 비율 산정 방식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위임

#### 나. 위임근거 없는 규제 정비

- ① 은행연합회장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(규정 案 제26조)
- ②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 삭제(규정 제48조 삭제)
  - (현행)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(매분기)하고, 금감원은 금융위에 이를 보고(매반기)
  - (개정) 타업권에 존재하지 않는 규제료,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 보고서를 통해서도 은행채 발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규제는 삭제
- ③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국금지규정 삭제(규정 제83조 삭제)
  - (현행)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(의뢰) 가능
  - (개정) 동규제는 삭제하되,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

### 3. 향후 일정

- 입법예고(10.13~11.22일), 규제위 심사(~12월)등을 거쳐 '18.1.31 시행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 prfsc@korea.kr

